

○ 제안이유

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

다대 2동사 신축비 마련을 위한 기채-1억원

(단위 : 백만원)

	사 업 개 요	사 업 비		
		계	지방비	기 채
계		790	690	100
건 축 비	철근콘크리트 1,026㎡	360	260	100
토 지 매 입 비	토지 661㎡	430	430	-

○ 검토의견

지방채의 발행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에 연리 3%의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지금까지의 지방채 발행액이 37억4,2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의 7%가 넘어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나 투자재원이 부족한 현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재산이 될 동사무소 신축비에 사용할 소요경비 일부를 기채 발행에 의존한 것으로 생각됨.

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.

○委員長 白盛守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.
質疑順序입니다.

質疑 및 答辯은 1問1答 式으로 하겠습니다.
企劃監査室長 나오셔서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럼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.

李炫澤 委員.

○李炫澤委員 李炫澤입니다.

현재까지 우리 沙下區 總 地方債發行 起債額 이 얼마나 됩니까?

○企劃監査室長 成鍾玟 우리 區 11月末 현재 여섯 件의 원금이 37억4,200만원 그리고 그 외 利子가 18억5,600만원 合해 가지고 55억9,800만원입니다.

○李炫澤委員 예, 알겠습니다.